



EU의회,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법안 승인

김진억 수석담당역

■ 최근 EU의회는 비EU국가로의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 일반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¹⁾의 최종 법률안을 승인²⁾함.

- EU행정위원회는 2012년 1월, 개인의 온라인 정보보호강화와 글로벌화·디지털화 되어가는 EU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1995년 제정 이후 19년 만에 포괄적으로 정보보호규정을 개혁할 것을 제안하고 법규정안 및 지침서 마련을 진행해왔음.
- 2013년 10월 21일, 개인정보 개혁 법안 마련에 주도적인 EU시민자유위원회는 EU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 등으로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후 10월 25일 개최된 EU정상회의에서 24일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메르켈 독일 총리를 포함한 35개국 외국 지도자의 통화 내용을 도청한 대규모 감시사건이 밝혀지면서 회원국 간(영국 v.s. 독일, 프랑스 등) 의견차이로 법개정 시한이 연기³⁾됨.
 - 이에 따라 EU시민자유위원회와 EU행정위원회 등은 국경 간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EU회원국 간 단일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국경 간 거래를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금번 법안마련에 주력해 왔음.
- 그동안 정보보호법률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EU위원회와 완화하고자 하는 EU의회의 의견불일치가 있었으나 금번 위원회 상정안을 EU의회가 받아들이면서 법제화⁴⁾가 탄력을 받음.

1)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M(2012)0011 - C7-0025/2012 - 2012/0011(COD)), 일반 법 규정(regulation)과 검경에 의해 취합되는 정보에 관한 지침서(directive)로 구성됨.
 2) 2014. 3. 12, 법규정안은 찬성 621, 반대 10, 기권 22로, 지침서는 찬성 371, 반대 276, 기권 30으로 승인됨.
 3) EU는 이후 6개월간의 조사 끝에 미 국가안보국의 선단적 감시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EU-US 간 무역거래가 위협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미국과의 은행자료거래와 정보보호에 관한 “안전처협정”을 중지할 것을 요청함.
 4) EU위원회가 상정한 법안은 EU의회와 EU협회의의 공동결정(co-decision)과정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럽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법(law)으로 채택됨.

■ 미국의 대규모 감시스캔들에 따라 금번 개정법안에서 강화된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분야임.

- 비EU회원국으로의 정보 이동: 2013년 발생한 감시활동과 같은 사건으로부터 EU시민의 보호를 위해 어떤 기업이라도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에 공개하기 이전에 EU의 각국 국가정보보호 기관(DPA)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제재벌금의 상향조정: 본 법 위반 기업은 최고 1억 유로 또는 국제 연간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함.
- 인터넷상 정보보호의 강화: 개인정보의 삭제권리, 정보수집(profiling) 제한 확대,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분명하고 평범한 언어의 사용요청 등

■ 상기한 세 가지 분야에서 논의되고 채택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1) 비EU국가로의 정보이전(43a조)

- 제3국이 특정 기업(예: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또는 클라우드 저장서비스제공사)에게 EU에서 처리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경우 해당 기업은 EU 국가정보보호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전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함.

2) 제재벌금의 상향조정(79조)

- 법률위반 기업에게 정보보호기관은 적어도 다음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함.
 - 다소 경미한 위반사건인 경우에는 서면경고
 - 정기적 정보보호감사, 또는
 - 최대 1억 유로 또는 국제 연간 판매액의 5% 중 큰 금액의 벌금
- 정보보호기관은 위반 기간, 태만 또는 반복 속성, 협조여부와 손해정도 등을 고려해야 함.

3) 인터넷상 정보보호의 강화

● 삭제권리(17조)

- 개인(정보주체, data subject)은 a) 정보처리가 EU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b) 정보가 당초 취합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또는 c)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승인을 반대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더 나아가 개인이 인터넷기업에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기업은 정보를 복제한 다른 기업에도 이러한 요청을 전달해야 함.
- 그러나 이 권리는 첫째, 정보가 역사적, 통계적 그리고 연구목적으로 필요할 때, 둘째, 공공의 건강이유 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할 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음. 또

한 삭제권리는 개인정보의 보유가 계약충족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될 때는 적용되지 않음.

● 정보수집(profiling)(20조)

- 개인의 근무성과, 경제적 상황, 위치, 건강, 기호,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를 기반으로 한 신뢰성 또는 행위를 분석 또는 예측하는 기법인 정보수집에 대한 제한설정
- 정보수집은 통칙으로서 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할 때, 관련 개인의 동의에 의해 허용되어야 하며, 또한 식별을 유도하거나 민감한 정보(특히 인종적 태생, 정치적 의견, 종교, 성적 성향, 유전적 또는 생체적 정보, 행정적 제재 또는 혐의범죄와 같은 정보폭로)에만 전적으로 기초해서는 안 됨.
- 정보수집은 자동처리에만 전적으로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되고 평가 후 결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인간적 평가를 포함하여야 함. 예를 들어 신용도를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명백한 승인(7조)

- 정보처리가 승인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기업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명백한 허가를 얻은 후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여기서 개인의 동의는 “서술 또는 분명한 확인적인 행위로 개인 의도의 자유로운, 특정의, 지식이 있는 명백한 표시”를 의미함.
- 계약의 이행 또는 서비스의 제공은 그러한 계약 또는 서비스의 완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됨.
- 더 나아가 동의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최초 취합된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함. 또한 동의의 철회는 동의만큼 쉬워야 함.

● 분명하고 평범한 언어, 정보에 대한 권리

- 개인이 지식이 있는 동의를 쉽게 하기 위해 정보관리자(data controllers)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설명할 때, 분명하고 간결하고 평범한 언어를 사용해야 함(11조).
- 개인정보를 취합할 때, 정보관리자는 상업적인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 매도, 임대 또는 암호화될지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설명해야 함. 또한 개인정보가 취합되는지의 여부나 특정한 처리목적상 또는 기타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기간 이상으로 보유될지의 여부를 서술해야 함. 이러한 행위는 쉽게 이해가능한 문장과 상징을 이용하여 행해져야 함(13a조).
- 정보관리자는 정보처리의 다양한 측면, 즉 정보주체의 접근권리, 정보의 수정과 삭제, 정보보호 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저장기간, 개인정보의 수취인, 정보수집(profiling)의 가능성 등을 개인에게 알려야 함(14조).

- 정보보호관(Data Protection Officer, 35조)
 - 공공기관, 한 해 5천 명 이상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핵심업무가 민감한 정보의 처리 또는 개인들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것과 관련된 조직은 정보보호관(DPO)을 지정해야 함.
 - 금번 정보보호관지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되었는데 기업의 종업원 수가 아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정보를 취합하는 지로 지정기준을 변경함. 또한 정보보호관이 종업원일 경우 최소 4년, 외부 계약자일 경우 2년 동안 지정되어야 함. EU행정위원회는 모든 경우에 2년을 제안했었음.
 - 항의권리(54a조)
 - 개인정보가 다른 EU회원국의 관리회사(예를 들어 인터넷회사)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은 관리회사가 있는 국가의 정보보호기관 또는 개인이 사는 국가의 정보보호기관 중 선택하여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음. 이는 개인의 사용언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금번 EU의회투표결과로 인해 EU는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함으로써 이후 개혁법안 법제화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이미 2014년 3월 4일, EU협의회 장관들은 개인정보보호개혁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EU회원국 기업들이 EU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EU정보보호법을 완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했으며, 정보보호개혁에 대한 EU법무장관협의회가 2014년 6월에 개최될 예정임.
 - EU위원회는 금년 내 개정안이 EU협의회와 공동결정에 의해 법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유럽 단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침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
- EU의 개인정보를 정보자산⁵⁾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하는 EU정보보호개혁 법안은 시사하는 바가 있음.
- EU의 개인정보보호개혁을 통해 개인의 권리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추구하는 기본적인 원칙(망각될 권리, 본인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개인 정보통제권 강화, 상품·서비스개발 단계부터의 정보보호우선)은 현재 국내 상황에서 참고할 만함.
 - 또한 향후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의 해외유출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정합성측면의 검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uropean Parliament 등)

5) EU시민의 개인정보 가치는 2020년까지 거의 매년 1조 유로까지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